
Policy and Law Report _Vol.12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14 ~ 2022.2.20) -

February 2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지자체·협업을 토대로 안전·국방·행정·제조 등 각 분야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가공부터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힘 인공지능 융합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국민체감 성과 창출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올해는 안전·국방, 행정, 제조, 기타 등 4대 분야의 총 13개 사업·과제에 대해 716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총 463.9억원 규모 10개 사업·과제를 수행할 33개 연합체를 신규 공모·선정할 계획임 < '22년 인공지능 융합·활용 주요 사업·과제 현황 > <table><tr><th>분야</th><th>사업(과제) 내용</th><th>기간</th><th>협업기관</th></tr><tr><td rowspan="4">안전·국방</td><td>① (신규) 화학물질 화재사고 대응(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td><td>'22~'24</td><td>소방청</td></tr><tr><td>② 선박·차량 식별 등 해안경계 지원(인공지능(AI)+엑스(X))</td><td>'20~'23</td><td>국방부</td></tr><tr><td>③ 지뢰탐지 인공지능 개발·실증(인공지능(AI)+엑스(X))</td><td>'20~'23</td><td>국방부</td></tr><tr><td>④ 지하공동구 안전 관리(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지능형관리)</td><td>'20~'24</td><td>지자체</td></tr><tr><td rowspan="3">행정</td><td>⑤ (신규) 재정·경제정책 분석·추론(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td><td>'22~'26</td><td>기재부</td></tr><tr><td>⑥ 세관 통관 불법복제품 판독(인공지능(AI)+엑스(X))</td><td>'20~'23</td><td>관세청</td></tr><tr><td>⑦ 출입국 관리 시스템 고도화(인공지능식별추적)</td><td>'19~'22</td><td>법무부</td></tr><tr><td rowspan="2">제조</td><td>⑧ 지역특화산업 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입 지원(인공지능+엑스)</td><td>'20~'23</td><td>지자체</td></tr><tr><td>⑨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효율화(인공지능(AI)+엑스(X))</td><td>'20~'23</td><td>산업부</td></tr><tr><td rowspan="4">기타</td><td>⑩ (신규) 산림해충 방제 지원(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td><td>'22~'24</td><td>산림청</td></tr><tr><td>⑪ CCTV 기반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 탐색(인공지능(AI)+엑스(X))</td><td>'20~'23</td><td>경찰청·지자체</td></tr><tr><td>⑫ 구강보철물 설계, 엑스레이 보안검색 등(민간지능정보서비스)</td><td>'17~'22</td><td>민간·지자체</td></tr><tr><td>⑬ 판교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실증 인프라(인공지능 기술실증 가늌터)</td><td>'21~'23</td><td>경기도</td></tr></table>	분야	사업(과제) 내용	기간	협업기관	안전·국방	① (신규) 화학물질 화재사고 대응(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	'22~'24	소방청	② 선박·차량 식별 등 해안경계 지원(인공지능(AI)+엑스(X))	'20~'23	국방부	③ 지뢰탐지 인공지능 개발·실증(인공지능(AI)+엑스(X))	'20~'23	국방부	④ 지하공동구 안전 관리 (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지능형관리)	'20~'24	지자체	행정	⑤ (신규) 재정·경제정책 분석·추론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	'22~'26	기재부	⑥ 세관 통관 불법복제품 판독 (인공지능(AI)+엑스(X))	'20~'23	관세청	⑦ 출입국 관리 시스템 고도화(인공지능식별추적)	'19~'22	법무부	제조	⑧ 지역특화산업 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입 지원(인공지능+엑스)	'20~'23	지자체	⑨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효율화 (인공지능(AI)+엑스(X))	'20~'23	산업부	기타	⑩ (신규) 산림해충 방제 지원(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	'22~'24	산림청	⑪ CCTV 기반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 탐색 (인공지능(AI)+엑스(X))	'20~'23	경찰청·지자체	⑫ 구강보철물 설계, 엑스레이 보안검색 등(민간지능정보서비스)	'17~'22	민간·지자체	⑬ 판교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실증 인프라(인공지능 기술실증 가늌터)	'21~'23	경기도	2022-02-15
	분야	사업(과제) 내용	기간	협업기관																																													
	안전·국방	① (신규) 화학물질 화재사고 대응(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	'22~'24	소방청																																													
		② 선박·차량 식별 등 해안경계 지원(인공지능(AI)+엑스(X))	'20~'23	국방부																																													
		③ 지뢰탐지 인공지능 개발·실증(인공지능(AI)+엑스(X))	'20~'23	국방부																																													
		④ 지하공동구 안전 관리 (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지능형관리)	'20~'24	지자체																																													
	행정	⑤ (신규) 재정·경제정책 분석·추론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	'22~'26	기재부																																													
		⑥ 세관 통관 불법복제품 판독 (인공지능(AI)+엑스(X))	'20~'23	관세청																																													
		⑦ 출입국 관리 시스템 고도화(인공지능식별추적)	'19~'22	법무부																																													
	제조	⑧ 지역특화산업 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입 지원(인공지능+엑스)	'20~'23	지자체																																													
⑨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효율화 (인공지능(AI)+엑스(X))		'20~'23	산업부																																														
기타	⑩ (신규) 산림해충 방제 지원(부처협업 인공지능 확산)	'22~'24	산림청																																														
	⑪ CCTV 기반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 탐색 (인공지능(AI)+엑스(X))	'20~'23	경찰청·지자체																																														
	⑫ 구강보철물 설계, 엑스레이 보안검색 등(민간지능정보서비스)	'17~'22	민간·지자체																																														
	⑬ 판교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실증 인프라(인공지능 기술실증 가늌터)	'21~'23	경기도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학물질 사고 대응 등 안전·국방 분야 인공지능 융합 추진 - (화학사고 대응, 소방청) 화재특성 분석을 통해 유출된 화학물질*을 식별하여, 맞춤형 화재진압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22년부터 신규 개발 *('22년) 질산 등 10종 → ('23년) 17종 → ('24년) 23종 /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실증 - (해안 경계, 국방부) 군 감시장비(레이더, 열화상기기 등)를 활용하여 해안객체 탐지 및 상황 판단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고도화하고 서해안 소초 등을 대상으로 실증 추진 - (지뢰 탐지, 국방부) 매설된 지뢰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해 탐지대상 확대('21년 5종 → '22년 12종) 및 지뢰 탐지 정확도를 향상하고 야전부대 지뢰 훈련장을 대상으로 실증 추진 - (지하공동구, 지자체) 노후된 지하공동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2개 지자체 지하공동구 시설(22km)을 대상으로 위험상황·센싱데이터 등을 표준화한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② 통관, 재정정책 등 행정 분야 인공지능 융합 추진 - (재정·경제·정책, 기재부)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일자리 측면의 재정투자 효과를 분석하고, 차세대 예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22년부터 신규 개발 - (불법복제품, 관세청)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복제품을 판독하기 위해 위조품 품목 확대('21년 30종 → '22년 35종 추가*) 및 판독 정확도를 향상하고, 인천세관 대상으로 실증 추진 * 정보기술(IT)제품, 자동차부품, 생활가전, 이미용품, 완구·문구, 패션잡화 분야 품목 35종 ③ 지역특화산업 등 제조 분야 인공지능 융합 추진 - (지역특화산업, 지자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광역지자체를 확대('21년, 충북, 12개 기업 → '22년 신규 6개, 24개 기업 이상)하여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입 - (공장 에너지, 산업부) 산업단지 내 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원 대상 산단을 확대*('21년 2개 → '22년 5개)하고, 최대 소비전력 예측·관리 등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개발·도입 지원 *('21) 창원, 반월시화 산단 → ('22) 광주첨단, 인천남동, 구미, 여수, 대구성서 ④ 산림해충 방제, 실종자 탐색 등에도 인공지능 융합 추진 - (산림해충 방제, 산림청) 산림영상(드론 촬영, 산림청) 등을 활용하여 고사목 판독 및 산림해충 발생 지역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22년부터 신규 개발 - (실종자 탐색, 경찰청·지자체)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를 신속히 탐색하기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3개 지자체·관할경찰서를 대상으로 개발·실증 - (민간지능정보화, 지자체·민간) 구강 보철물 설계, 저장매체 X-ray 보안검색, 양귀비 불법재배 탐지 등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6개 과제)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지원 - (판교 가늌터, 경기도)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체험·실증을 위한 기반시설을 증설하고, 모빌리티·생활편의·재난안전 등 인공지능 융합 실증과제('21년 7개 → '22년 6개 추가) 지원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및 16개 지자체,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를 개최함 금번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구축중인 「지역 디지털혁신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현황 및 애로, 제안사항 등을 청취함 「지역 디지털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전략1)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 인재, 연구소 등을 지역의 매력적인 공간·거점*에 정착·집적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2조에 따른 ICT(SW)진흥단지 ② (전략2) 지역에 정착하여 일하고 성장함으로써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③ (전략3) 지역의 디지털 전문인재, 기업 등이 서울·경기(판교)에 가지 않고도 일자리 및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디지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R&D역량, 기업성장 환경 등 기반 조성 ④ (전략4)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산·학·연·관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2022-02-17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함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 방향」으로는 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기술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유망기술 표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저탄소기술 표준화를 통한 탄소중립 조기 실현 지원 ②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기업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한 혁신기술 시장 진출 지원	2022-02-16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기술규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규제 애로 해소 - 新측정표준 개발·보급을 통한 과학·산업기술 신뢰성 제고 ③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국민생활 편의 확대 -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국민 생활가치 제고 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를 표준활용 성과 제고 - 국내외 전방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표준환경 변화 대응 - 기업 생존을 위한 표준 선순환체계 구축	
	•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함.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됨 2022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으로는 ①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 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가산 -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 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을 적용 -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 적용 ②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 지속 -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14→19명)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19→50명) 보강으로 전문성 제고 *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협의체로, 미국·유럽(ECCK, 獨, 佛, 英)·일본·중국 주한상의, 옴부즈만 및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 ③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임	2022-02-1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5. 시행)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등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한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저장·신설 또는 확장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세 보전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022-02-1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5. 시행)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4.14. 시행 예정)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이월 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44조의2제3항 본문, 제111조제1항제17호 신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비 인정 (제19조제19호의2) - 손비 인정 범위에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추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함 ③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 (제42조제2항제2호) -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의 접대비 지출 관리를 강화함 ④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구체화 (제86조의2 신설) - 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⑤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 (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함 ⑥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 의무 폐지 (현행 제97조의4제5항 삭제)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확인·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부담을 경감함 ⑦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의 범위 구체화 (제133조의2제2항 신설) - 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7.1. 시행 예정)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 (제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신설) -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다목, 제42조제2호사목 및 제45조제6호 신설) -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안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④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 (제70조제1항제6호) - 종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함 ⑤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 (제75조제9호) -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⑥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정비 (제96조의2제8항 및 제10항 신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하여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⑦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신설) -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만원, 1,00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7.1. 시행 예정)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의 요건 및 공제금액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증명서를 추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을 강화하며, 종전의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 증가율이 5퍼센트 이하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제20조의2제1항라목 신설)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②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 정비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제8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신설) - 현행 규정상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야 하는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공익단체의 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 (제107조제2항 단서 및 제216조의3제1항·제2항) -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도모함 ④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등 (제116조의4)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⑤ 양도소득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대상 확대 (제154조제1항제1호)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 ⑥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제154조제10항제1호, 제155조제20항·제21항, 같은 조 제2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5항제3호,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7항) -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⑦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 (제155조의3 신설) -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함 ⑧ 1세대의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제156조의2제4항 및 제156조의3제3항) - 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 외에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 -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적용받게 되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후 납세자가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통해 기본공제를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서 거주자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 -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⑪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별표 3의3) -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2.15. 시행)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점을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1 분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하는 한편, 맥주의 발효·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하여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함으로써 과실을 첨가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생산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u>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u>」(2022.2.18. 시행) 위탁기업의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으로 나누어 정하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위반 시 2,50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02-15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u>」(2022.2.18. 시행)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 등이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3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8. 시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2-02-15
공정거래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8. 시행) 원사업자의 기술유행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의 관리 및 확인을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에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022-02-15
금융 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8. 시행)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전에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022-02-1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주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안 제88조 신설)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 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②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안 제179조 제19항 신설, 제183조 제207조 및 제216조의2 제3항) -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함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 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③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제출방법 규정 (안 제216조의4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사람별로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15(화)~2/18(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국세조세제도과)로 제출	2022-02-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규정,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및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함 ②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함 ③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추가함 ④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와 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 주주의 범위를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 대한 거주자의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배제 신청 및 기본공제 적용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함 - 거주자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한도관리를 위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지정함 - 금융회사등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신설함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	2022-02-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안 제129조, 제132조 제17항 신설, 제137조 및 제163조의2 제3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 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15(화)~2/18(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로 제출	2022-02-1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일괄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에 따른 신청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확대에 따른 제출 서류 규정 (안 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2제2항 신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21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 하고 제출규정을 마련함 ②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구체화 (안 제47조)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별 신고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규정함	2022-02-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18(금)~2/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로 제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IPTV 품질평가 절차 등 (안 제12조의3 신설)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의견 제시기간 : 2/18(금)~3/3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로 제출	2022-02-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 (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②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 (안 제18조의2) -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의견 제시기간 : 2/16(수)~3/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로 제출	2022-02-1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음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19조) ②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③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	2022-02-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174조, 제174조의2 및 제174조의3 신설)	2022-02-14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	2022-02-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앱 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나 해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가입 절차에 비하여 결제취소 또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9제1항,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2022-02-11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2022-02-14
환경노동 위원회	•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제60조를 해석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판결하였음	2022-02-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와 같은 행정해석과 판례의 상반된 해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선 기업의 인사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60조제1항)	
국토교통 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1.4.8. 현행법 개정)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고,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が必要한 실정임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0, 제49조의21 및 제92조제17호·제18호 신설)	2022-02-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2/24(목)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 - 역동적인 지정학적 구도 – 국제 안보, 코로나19, 민주주의	
	2/2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7호 발간	
	2/25(금)	「헌법과 법제」 2022년 2월호 발간 -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2/22(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5호 발간 -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	
	2/22(화)	「현안, 외국예선」 제30호 발간 - 영국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22(화)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4호 발간 -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등	
예산정책처	주중	「NABO 추계&세제이슈」 제18호 발간 - 비용추계·세제분석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의 통합적·체계적 분석 정보 제공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월호 발간 - 한국 ESG투자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 등 -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등	
입법조사처	2/23(수)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	ZOOM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1(월) 10:00	민주당 정권 경제성과의 허실: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2(화) 10:00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가능한가?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례를 중심으로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3(수) 14:00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4(목) 14:00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을 논하다	조경태, 김정재, 이철규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5(금) 07:30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전혜숙, 김병기, 강선우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2/18(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76호 발간	
국회도서관	2/15(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4호 발간 -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2/15(화)	「현안입법 알리기」 - 재난안전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입법조사처	2/14(월)	「이슈와 논점」 제1925호 발간 -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